

<공통사항 답변>

-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에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구분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거래를 대체전표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인정함),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전 전표를 삭제하고 수정된 전표를 새롭게 입력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로 입력(F3)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량을 활용해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성과평가 및 원가통제 등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원가계산방법입니다. 한편, 외부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표준원가계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말에 실제 원가와와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 ①번 문항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은 단서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법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기환급 신청이 없더라도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4번(기각)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계정을 사용하지만, 그 외의 거래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부품 교체대금 중 어음 매입분을 지급어음으로 작성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 수정 전 카드매출에 대한 입력전표가 외상매출금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 해당 문제에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과세매출 전표를 삭제하고 새로 '11.과세'로 전표를 입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매출을 중복하여 계상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을 추가로 등록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 승용자동차 임차료에 대한 문제는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54.불공' 외의 과세유형으로 작성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인용)

- 영업부 퇴직금 추계액은 58,000,000원이므로, 가답안에 기재된 금액인 65,000,000원을 58,000,000원으로 수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직계존속(정명순)의 교육비에 대해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종류를 '장애인 재활교육기관'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를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오인하여 교육비를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 해당 문제에서 '다른 소득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를 삭제한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를 삭제한 답안과 삭제하지 않은 답안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 [법인세 집행기준 20-0-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작성한 답안을 정답으로 수정하며,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기존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문제는 기존 세금과공과금 계정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된 기존 자료를 제조원가로 임의 수정하여 작성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인용)

- 해당 문제의 '당사의 임직원, 주주가 아님'에서 쉼표(.)는 두 대상을 동등하게 열거한 표현으로, '임직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표현만 보았을 때 '당사의 임직원이지만 주주는 아니다'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로 작성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를 0.83명이 아닌 다른 수치로 반영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5번(인용)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탭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당기증증감을 ④증가란에 +10,000,000원으로 작성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미착품은 선적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의 소유권과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의 재고자산은 인도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며, 해당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반품 예상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채로 계상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 해당 문제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문제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의 이중자산 교환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7]에 따라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 간의 교환은 취득한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 ④번 문항의 내용은 청약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기일이 경과하여 신주 청약증거금이 최종 확정되어 회사에 귀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항의 완전성을 위한 조건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 중 자본조정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입니다.

A형 6번(B형 16번)(기각)

- 보기 '나'는 고정비의 기본적인 정의를 서술한 것이므로, 관련 범위 내라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준고정비와 고정비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보기 '마'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현물 장려품의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에서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는 내용은 과세최저한의 적용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단어의 표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 전표 입력 시 채권·채무 계정과목에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거래처를 기입해야 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므로 거래처를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 전자제품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동스크랩 등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당사와 관련하여 매입자납부특례에 대한 내용을 출제한 것은 문제상의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답변 ④의 내용에 따라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와 관련된 계정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반영해야 하지만, 거래처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선납세금에 거래처 코드를 반영한다고 해서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전산 데이터상에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 100,000,000원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 보증금을 회수하여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채무 계정과목에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계정은 거래처를 기입해야 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므로 거래처를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2번(일부인용)

- 하나의 전표에서 품목을 복수거래로 설정하여 입력한 답안은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1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품목들을 각각 구분되는 거래로 보아 2개의 전표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 해당 문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임의 판단하여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 해당 문제의 경우 공급시기인 선적일과 대금수령일이 일치하므로, 수령한 대금은 선수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기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공제액을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탭의 '구분' 항목의 입력 여부는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 해당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유가증권 종류별로 구분하여 복수의 전표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및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 근로자의 생산직 여부 등을 반영하는 것은 '사원등록 > 기본사항 > 생산직등여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새롭게 등록하여 과세 급여로 반영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 프로그램 확인 결과, 혼인세액공제 여부 체크란의 프로그램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의 세대주 여부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문제에서 고유번호를 명시하였으므로 고유번호 또한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유번호 입력란의 프로그램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문제의 기부금이 현금이고 금액도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금전으로 입력한 답안에 한하여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 ④번 문항은 후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에 취득한 원가로 구성되므로, 현재의 공정가치(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하는 재고자산의 경우 선적 시점에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이전되므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해당 문제에서 위탁상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상품의 경우 기말 현재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한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하며, 현금주의를 반영하는 현금흐름표 또한 기존 재무제표의 발생주의 정보를 기초로 재가공하여 작성합니다. 아울러 ②번 지문은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을 언급한 것이며, 특정 재무제표 서식의 작성기준만을 한정하여 설명하는 지문이 아니므로, 해당 지문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

A형 15번(B형 5번)(기각)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운임, 하역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합니다. 수입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역시 원재료 취득 부대원가에 해당하므로, 원재료 외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답변 ④의 내용에 따라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와 관련된 계정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 외 계정과목의 경우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 계정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반영한다고 해서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 해당 문제는 제품 판매 계약 후 계약금을 수령한 거래이므로 선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선급금 계정으로 작성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 당사 발행 당좌수표는 당좌예금계좌에서 지출되므로 당좌예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타사 발행 당좌수표는 통화대용증권으로서 당좌예금의 증가가 아닌 현금을 수취한 것이기에 현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채권·채무 계정과목에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계정은 거래처를 기입해야 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므로 거래처를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미지급한 2,200,000원'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비품을 구입하는 거래가 아닌 기존의 비품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미지급금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당 거래에서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발행주체는 당사가 아닌 (주)제이디이므로, 지급어음이 아닌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해당 거래를 업무무관 지출로 판단하여 불공제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급처명을 해당 세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를 '인천세관'이 아니라 해외 공급처인 'WEI사'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명시한 것은 작년 계약금 수령 시점에 이미 현금 입금 및 선수금 계상 회계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당기 공급 시점에는 기계상된 선수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중복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 원재료 계정과목은 원재료 매입단계 및 재공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와 같은 매출 거래에서 원재료 계정과목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6번(부분인용)

- 해당 문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이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과세유형을 '51.과세'로 입력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의 임가공비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주된 영업활동 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닌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 간판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으로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채무에 해당하여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는 비품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기존 미지급 대금을 지출하는 거래이므로 차변을 비품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 해당 문제의 수정 전 거래는 면세매입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 공급대와 공급가액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매입으로 수정할 경우, 총액 1,1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고 보아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으로 구분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1,100,000원으로 입력하여 공급대가를 1,210,000원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장기차입금'이라고 명시하였고, 회계 장부상 장기차입금 계정의 금액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기입력된 회계 데이터를 수정 및 마감하는 결산분개 문제의 특성상 외화장기차입금이 아닌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 회계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선급비용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기말 시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50,000,000원에 대한 결산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표 입력 시 채권·채무 계정과목에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동성장기부채 계정은 거래처를 기입해야 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하므로 거래처를 누락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6번(B형 6번)(기각)

-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 해당 문제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므로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며,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은 부채 계정으로 미수금과 구분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 안동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입니다. 임의로 관할 세무서를 수정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산데이터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 해당 문제의 은행송금수수료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가 아니라, 기존 미지급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판매비와관리비 항목 중 판매수수료가 아닌 수수료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판매수수료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 본 시험에서 당사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을 기본 전제로 출제되며 제조업을 경영하지 않으므로, 제조 사업장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제조업을 가정하여 보험료 계정과목을 제조원가 코드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 해당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만'이라고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표현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무회계 1급>

1부-A형 단답형 5번(B형 단답형 2번)(인용)

- 해당 문제 (4)번 지문에서 '공급가액'으로 표현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구별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는 세법상 공급대가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경우 27,500원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답안을 '107,500원'으로 작성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계산식>

(2) 납부세액의 계산 : ① - ② - ③ + ④ = 107,500원

④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5,500,000원 × 0.5% = 27,500원

<세무회계 2급>

본 급수에서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세무회계 3급>

1부-A형 3번(B형 8번)(기각)

- ④번 문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표현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법인세법상 회수기일 도래기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 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해당 문제는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번 지문의 내용은 타당하며, 틀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계 1급>

2부-A형 주관식 2번(B형 주관식 5번)(인용)

- 일반적으로 '가격'은 단위당 판매금액을 의미하며,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단위당 금액을 구하는 최소대체가격을 질문하였으므로 단위당 금액으로 산정한 답안이 타당하나, 단위당 금액이 아닌 총 최소대체가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위당 금액이 아닌 총 최소대체가격으로 산정한 '7,600,000원(= 1,900원 × 4,000개)' 역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기업회계 2급>

본 급수에서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업회계 3급>

본 급수에서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